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08
----------	-------

발의연월일 : 2021. 6. 4.

발 의 자 : 전재수 · 이장섭 · 양경숙
유정주 · 신영대 · 김정호
이규민 · 고영인 · 전용기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같은 비율로 증액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체결시에는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추가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제기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추후에 다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면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합의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

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 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항·제11항,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11항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그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후의 하도급계약의 시기·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⑪ 원사업자가 제10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자재비·인건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10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한다.

⑪ 원사업자가 제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감액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항을 준용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설계변경”을 “설계변경, 추가작업”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제4항까지(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제4항까지(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를 “제1호의2,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10항을 위반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발급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0항,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⑨ (생략)</p> <p><u><신 설></u></p>	<p>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 ⑨ (현행과 같음)</p> <p><u>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시 그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이후의 하도급계약의 시기·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u></p> <p><u>⑪ 원사업자가 제10항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u></p>
<p><u><신 설></u></p> <p>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u></p>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증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1.·2. (생략)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

제11항

제11항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

1. 설계변경, 추가작업-----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
-----제13조제12항-----

-----.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

-----제13조제12항-----

-----.

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
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
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
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
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
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
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
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
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
-----제4항까
지(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항
및 제10항-----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제4항까지(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항 및 제10항-----

제3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의2, 제2호-----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조제10항을 위반하여

<p>2.·3. (생 략)</p> <p>③ (생 략)</p>	<p><u>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u></p> <p>2.·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